

웅지세무대학교	개인정보보호규정	문서번호	3-3-08(F)-0
		제정일자	11.10.01
		최근개정	13.01.01
		주관부서	사무처 전산팀
		홈페이지공개	공 개

웅지세무대학교 사무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웅지세무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01.>

제2조(적용범위) ① 적용 범위는 대학교 전 부서로 한다. <개정 2013.01.01.>

②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따로 규정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개인정보 취급자”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처리”는 컴퓨터 또는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 및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출력 및 재생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은 특정개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6. “처리정보”는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7. “보유”는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8. “보유부서”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정보주체”는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⑥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⑦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⑧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 관리조직

제5조(개인정보 관리조직) 개인정보 처리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① 개인정보 전체 관리부서는 사무처 산하에 둔다.
- ② 대학교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별도로 지정한다. <개정 2013.01.01>

제6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대학교 개인정보관리 조직을 관리·운영하며, 개인정보의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1.01>

- ② 관리책임자는 사무처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01.01.>
 1. 대학교의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의 수립·시행
 2. 대학교의 개인정보침해 관련 민원의 접수·처리
 3. 대학교의 개인정보처리실태의 점검 및 감독
 4. 대학교의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취합
 5.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대학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7조(개인정보 관리담당자) ① 개인정보 관리담당자(이하“관리담당자”라 한다)는 관리책임자를 보좌 하여 개인정보 관리조직을 운영하는 업무를 행한다.

- ②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계획 수립 및 운영
 2.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3. 개인정보 교육 계획 및 실시

4. 개인정보 파일 대장 유지 및 관리
5. 개인정보보호 방침 수립 및 유지 관리
6. 홈페이지상 개인정보 노출 현황 점검 및 공지

제8조(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 ①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이하 "분야별책임자"라 한다)는 관리 책임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각 행정부서와 연구소 또는 학과에서 개인정보파일 관리를 담당한다.

②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 보유 부서에서 지정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책임자는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해당 분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설정 등 제반 보호 장치에 관한 사항의 확인·감독
3.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지도·감독
4.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담당자에게 보고
5.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내용을 대장으로 관리
6. 개인정보 제공·이용 요청시 내용을 검토하여 이용·제공 여부 결정
7. 보유하고 있는 모든 웹페이지 초기화면에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게재
8.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관리담당자에게 통보
9.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책임자가 정한 사항

제9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관리책임자가 되고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3. 위원 중 각 부서의 팀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4. 위원은 외부인을 임명할 수가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접근권한 심사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처리 위반자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관리담당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 결의도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가 필요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에 이 사실을 보고 한다

⑨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3장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유

제10조(개인정보 수집) ① 개인정보의 수집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 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1조(보유 범위) ①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② PC내 개인정보파일 보유 시 파일 암호화 등의 안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13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① 보유부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 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시 제한) ① 부서간의 개인정보이용 또는 조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대학교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대학교 이외의 자에게 제공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타 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1.01>

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 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 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대학교 내부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01.01>

제1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19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CCTV 설치·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5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제17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정기적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취급자(이하 "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 등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8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①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부서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이용·제공 필요시 전자결재를 통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분야별책임자의 결재 협조가 필요하며, 관리담당자의 결재를 득한 후에 이 용·제공해야 한다.

③ 정보취급자는 제4조의 각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별첨 1>의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관련 부처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제19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 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관리책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 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정보의 열람 제한) 관리책임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개인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조사, 보상금·납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개인정보의 정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관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불복청구) 제19조제1항 및 제20조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관리책임자가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 정한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의 파기

제23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4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제9장 기 타

제25조(준용)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 한다.

부 칙 <1판-제정/시행 2011.10.01.>

이 규정은 2011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판-개정/시행 2013.01.01.>

이 규정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 ()는 업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웅지세무대학교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웅지세무대학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대학교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기준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웅지세무대학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 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

일 시 : 년 월 일

소 속:

성 명: (인)

웅지세무대학교 총장 귀하